

의안번호	제 100 호
의 결 연 월 일	2018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

발 의 자	김기창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8년 11월 21일

# 충청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

(김기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0
----------	-----

발의연월일 : 2018년 11월 21일

발의자 : 김기창, 이수완, 윤남진,  
박병진, 연종석, 오영탁,  
서동학

## 1. 제안이유

충북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두는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임기, 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의 직무, 실무협의회, 관계기관 협조 요청,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다.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3. 조례안 : 붙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 균형건설국 혁신도시발전추진단과 협의

라. 입법예고 : '18. 10. 23. ~ '18. 10. 29.(의회홈페이지)

## 충청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른 충청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기) 협의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 이전공공기관의 대표,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 등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협의체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기로 한 사항을 누설한 경우
4. 상당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회의를 진행한다.

제5조(실무협의회) ①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등) 협의체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도시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 법령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4(지역인재채용협의체) ①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에 협의체(이하 "지역인재채용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인재채용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한다.

1. 이전지역인재의 취업 촉진을 위한 수요맞춤형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2.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인재채용협의체는 위원장 1명(제31조제1항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2명을 말한다)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위원장은 시·도지사로 하고,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이전공공기관의 대표,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2(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이하 "지역인재채용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1명을 지명할 수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도지사가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구성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 및 도가 협의하여 정한다.